

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-273호

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

일부개정안

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3-2-1(3)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- ①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가능한 지역
- ② 실내체육관, 사회복지시설, 공공청사 등 도시민의 여가·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

3-4-1. 본문 중 “다음과 같은”을 “다음 각호의 사업으로서”로 하고, 3-4-1(6) 중 “지역특화발전”을 “도시민의 여가 선용, 지역특화발전”으로 한다.

3-5-1.(1)① 중 “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로”를 “전면매수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혼용방식(이 경우 환지 대상은 해제대상지역내 지목이 대·공장용지·철도용지·학교용지·수도용지·잡종지인 토지로 한정한다)으로” 로 하고, 3-5-1.(3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-5-1.(3) 해제대상지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퍼센트 비율로 임대주택을 확보한다. 다만, 산업단지·경제자유구역·친수구역·집단취락·R&D단지·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(당해 특별시 또는 시의 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하여 특별시장 또는 시장이 임대주택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) 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전체 세대수 대비 10~25퍼센트 비율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.

4-2-2.(2) ①에서 “시·도”를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시·군”으로 하고, 단서를 삭제한다

부칙(2013. 8.)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p>(1) ~ (5) (생략)</p> <p>(6) 기타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, 공간구조 개선, <u>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</u></p>	<p>(1) ~ (5) (현행과 같음)</p> <p>(6) ----- ----- <u>도시민의 여가 선용,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</u></p>
<p>제5절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</p> <p>3-5-1.(1)①해제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자에 의한 <u>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한다.</u></p> <p>가~바. (생략)</p> <p>3-5-1.(3) 해제대상지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,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보급자리 주택 업무처리지침(국토해양부 훈령) 제5조에서 정하는 보급자리주택의 건설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산업단지·경제자유구역·친수구역·집단취락·R&D단지 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10~25퍼센트 수준까지 이를 완화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절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</p> <p>3-5-1.(1)①해제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자에 의한 <u>전면매수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혼용방식(이 경우 환지 대상은 해제대상지역내 지목이 대·공장용지·철도용지·학교용지·수도용지·잡종지인 토지로 한정한다)으로 추진한다.</u></p> <p>가~바(현행과 같음)</p> <p>3-5-1.(3) ----- -----<u>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퍼센트 비율로 임대주택을 확보한다. 다만, 산업단지·경제자유구역·친수구역·집단취락·R&D단지·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(당해 특별시 또는 시의 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하여 특별시장 또는 시장이 임대주택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) 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전체 세대수 대비 10~25퍼센트 비율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.</u></p>

4-2-2.(2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견청취, 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사를 경유하여야 한다.

4-2-2.(2) ① -----

-----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
시·시·군-----

-----.<삭 제>